

와우산순환산책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대한
실사보고서

1994. 7. 7.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 마포구 창전동 42-7
(시범아파트 *-***)

성명 : 오영순의 23인

나. 소개의원 : 이종일 의원

다. 접수일자 : '94. 6. 23.

라. 회부일자 : '94. 6. 23.

마. 상정일자 : 제23회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7. 6.)상정, 질의토론, 현장확인 제2차위원회('94. 7. 7.)상정, 채택

2. 청원요지

와우산 근린공원에 순환산책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물론 앞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늘어나는 주민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와우산 근린공원에 순환산책로의 필요성이 절대 요망되는 바, 기존도로와 연결될 수 있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순환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인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현재 진행중인 창전동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용역측조사 업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로 하여금 재개발사업 주체와 조속히 협의하여 순환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청원인과 더불어 의회에 요청함.

3. 취지설명의 요지(소개의원 이종일 의원)

와우산 근린공원에 순환산책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물론 앞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늘어나는 주민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와우산 근

린공원에 순환산책로의 필요성이 절대 요망되는 바, 기존도로와 연결될 수 있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순환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인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현재 진행중인 창전동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용역측조사 업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로 하여금 재개발사업 주체와 조속히 협의하여 순환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청원인과 더불어 의회에 요청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와우산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 조성계획은 이미 수립된 것으로 사료됨.
본 조성계획에 의하면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구간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산책로는 계획되어 있지 않고 보행 산책로만 계획되어 있음. 그러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1,089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앞으로 늘어나게될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유사시 차량진입도 가능한 도로의 개설은 지형적으로나 공원 이용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아울러 필수적 공원시설인 도로의 개설은 공원의 기능을 한층 더 향상시켜 공원조성 목적에도 합당하고 인근 고지대 주민들의 통행에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특히 재개발사업으로 산책로 구간 주변에 옹벽 축조공사가 시행될 예정인바 이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도시공원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부담 문제도 관계 부서에서는 재개발사업 주체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구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답변요지(박길동 건설국장) : 우리측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개발조합측과 협의하여 재개발조합측에서 협조를 해주면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요지(한현덕 위원) : 재개발조합측 및 삼성건설측과 협의하여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도로개설에 협조해 줄수 있지 않은가?
- 답변요지(고준기 주택과장) : 재개발조합 및 삼성건설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재개발사업승인을 해줄때 도로개설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불여 승인을 해 주었으면 쉬웠을 것을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소관만 따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처리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윤동현 위원 :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의견 : 별첨

10. 기타사항

○ 현장답사

- 일시 : '94. 7. 6.~11:00~12:30
- 내용 : 현지에서 건설국장으로부터 현장설명을 청취하고, 도로를 개설할 여건이 되는지 조사.

와우산순환산책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대한 의 견 서

- 와우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이용주민은 물론 인근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공원의 기능을 한층 더 향상시켜 구민의 보건향상과 정서생활의 함양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 본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산책도로 구간은 광장 및 보행로로 계획되어 있어 유사시에는 차량진입도 불가능하고 인근 고지대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함도 인정되는바, 필수적 공원시설인 도로의 확보 차원에서도 차량진입이 가능한 순환산책로의 개설은 필히 요구되므로 기존도로와 연결하여 개설한다면 명실상부한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용역축조 공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공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개설 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도 재개발 사업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공원의 기능도 향상시키고 청원인들의 요구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원전명	와우산 순환산책로 개설요구에 관한 청원		
청원인	주 소	마포구 창전동 42-7(서강시범APT *-***)	
	성 명	오영순외 23인	주민등록번호 *****-*****
소개의원	이 종 일		
소개년월일	1994. 6. 23.		

소 개 의 견

본 청원은 와우산 근린공원에 순환 산책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물론 앞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늘어나는 주민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와우산 근린공원에 순환 산책로의 필요성이 절대 요망되는바, 기존도로와 연결될 수 있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순환 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인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진행중인 창전동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옹벽 축조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로 하여금 재개발사업 주체와 조속히 협의하여 순환 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청원인과 더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요망합니다.